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 . . . (제 회)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립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가운데 시국사건에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일정기간 임용에서 제외된 교원들에게 가해진 기본권 침해를 회복하기 위해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941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임용제외 교원의 임용제외기간에 대한 근무 경력 인정, 재직기간 산입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임용제외교원의피해회복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3조, 제4조 및 제5조)

- 임용제외교원에 대한 피해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용제외교원의 임용권자별로 임용제외교원피해회복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임용제외교원피해회복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감으로 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나. 근무경력 인정 신청 및 결정 절차(안 제7조 및 제8조)

- 1) 임용제외기간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 영 시행
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 영 시행일 이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임용제외교원으로 확인된 교원은 해당 결정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본인의 임용권을 관할하는 시·도교육감에
근무경력 인정을 신청하도록 함
- 2) 임용제외교원의피해회복심의위원회는 근무경력 인정 신청을 접수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용제외교원의 해당 여부, 임용제외기간
을 심의·결정하되, 위원회의 결정으로 한 차례에 한해 30일의 범위
에서 심의·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3) 임용제외교원의피해회복심의위원회는 심의·결정한 임용제외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임용제외교원, 그 임용권자 및 공무원연금
공단으로 통보하도록 함
- 4) 임용제외교원의피해회복심의위원회의 통보를 받은 시·도교육감은
해당 임용제외교원의 임용제외기간을 환산율 100%의 경력으로 산
입하여 호봉을 재확정하도록 함

다. 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의 신청 등 절차(안 제9조)

- 1)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신청서에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2) 위원회는 재심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결정하

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
서 재심의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라. 재직기간의 산입 신청 및 승인 절차(안 제10조)

- 1) 임용제외교원이 임용제외기간을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기
간으로 산입하려는 경우 임용제외교원의피해회복심의위원회의 결
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무원연금공단으로 신청하면
공단은 재직기간 산입여부를 결정하여 산입하도록 함
- 2) 재직기간 산입에 따른 소급기여금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소급기여금 납부 중 퇴직하
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급여 지급 결정일 전까지 납부한 소급기
여금에 상당하는 기간만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함

마. 퇴직교원의 재직기간 산입 신청 및 승인 절차(안 제11조)

- 1) 퇴직교원의 경우 재직기간 산입을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1개월 이내의 기간까지 납부한 소급기여금에 상당하는 임용제
외기간을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함
- 2) 공무원연금공단은 퇴직교원의 재직기간 산입에 따라 퇴직 당시의
퇴직급여액을 재산정하여 정산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대통령령 제 호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국사건)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국사건”이란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2013년 5월 22일 법률 제1176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시국사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1.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집회·시위, 유인물 배포 및 단체결성·가입 관련 사건
2. 교원노동조합 기타 노동운동 관련사건
3. 학원민주화운동 관련사건

제3조(임용제외교원의피해회복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임용제외교원에 대한 피해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용제외교원의 현재(2024년 1월9일을 말한다)의 임용권자(시·도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임용제외교원의피해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제7조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용제외교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임용제외기간 확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임용제외교원의 호봉·연금 등의 불이익 해소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결정 시 과거 자료의 소실 등 임용제외교원의 귀책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에 반하는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감이,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은 학식과 교육 경험이 풍부한 자와 교원 임용 업무 경력이 있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외부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위원의 수당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근무경력 인정 신청) ①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임용제외기간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법 공포 당시 재직 중이었으나 이후 퇴직한 자를 포함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경력의 인정 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 영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용권자(신청일 현재의 임용권자를 말하며, 퇴직한 자의 경우에는 퇴직 당시의 임용권자를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 영 시행일 이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임용제외교원으로 확인된 교원은 해당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1. 성명, 주민등록번호

2. 공무원인사기록카드

3. 주소, 전화번호 및 연락처

4. 그 밖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에 따른 임용제외교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신원 대조·확인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립대학,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공단”이라 한다), 그 밖에 기관·법인·단체의 장(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근무경력 인정 결정) ① 위원회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심의·결정을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한 차례에 한해 30일의 범위에서 심의·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결정 시 자료의 부존재 또는 소실 등으로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개인별 임용제외기간의 기산일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임용제외교원의 국립 사범대학 졸업일 이후 가장 빠른 학기 시작일(매년 3월 1일 또는 9월 1일을 말한다)을 임용제외기간의 기산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결정한 임용제외교원의 임용제외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제외교원 결정 통지서에 적시하여 해당 임용제외교원, 결정일 현재 해당 임용제외교원의 임용권자 및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무원연금공단”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도교육감은 해당 임용제외교원의 임용제외기간을 환산율 100%의 경력으로 산입하여 호봉을 재확정한다. 다만 임용제외기간 중 이미 호봉경력으로 인정받았던 기타 경력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의 경력에 대해서는 이 항 본문에 따른 임용제외기간 경력과 기타 경력 중 해당 임용제외교원에게 유리한 경력을 적용한다.

제9조(재심의 신청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제8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임용제외교원 결정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한 차례에 한해 30일의 범위에

서 재심의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이 조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재심의와 그 결정서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제10조(재직기간 산입신청 및 승인) ① 제8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임용제외교원이 임용제외기간을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으로 산입하려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제외교원 재직기간산입신청서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공무원연금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재직기간 산입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임용제외교원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연금취급기관장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임용제외기간이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합산 또는 산입되는 경력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산입하되, 같은 법 제4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재직기간 상한에 따라 일부기간만 산입되는 경우에는 임용제외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의 기간을 우선하여 산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산입한 공무원이 산입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산입 여부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산입취소신청서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입된 재직기간에 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복무기간 산입의 예에 따른다.

⑤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소급기여금(이하 이 조에서 “소급기여금”

이라 한다)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납부하려는 달의 해당 월분의 기여금액을 기준으로 남은 소급기여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할 수 있으며, 소급기여금을 납부 중인 임용제외교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급여 지급 결정일 전까지 납부한 소급기여금에 상당하는 임용제외기간만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⑥ 공무원연금공단은 소급기여금의 납부가 완료되거나 소급기여금 납부 중 해당 임용제외교원이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으로 산입되는 기간을 확정하여 국민연금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제11조(퇴직교원의 재직기간 산입신청 및 승인) ① 제8조에 따라 근무경력을 인정받은 퇴직교원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용제외기간을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으로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이 산입을 승인한 날은 퇴직한 날의 전날로 본다.

② 퇴직교원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재직기간 산입을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한 달의 기여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급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까지 납부한 소급기여금에 상응하는 임용제외기간만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③ 공무원연금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퇴직교원의 재직기간을 가산하여 퇴직 당시의 퇴직급여액을 재산정한 후 이미 지급된 급여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차액을 지급한다.

제1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호봉재확정에 관한 적용례)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호봉재확정 기
준일은 2024년 7월 10일로 하며, 재확정된 호봉에 따라 보수를 정산한
다.

■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임용제외교원 결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일		접수번호		처리기간 30일	
임용제외 교원	성명(한자)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재직여부 (2024.1.9. 기준)	[] 재직 [] 퇴직	신청일 현재 근무기관 (퇴직한 경우 최종 근무기관)		
신청 사유	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 정리위원회 결정	사건번호			
		사건명			
		결정일	년 월 일		
	임용제외 기간 유형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각목에 따른 임용제외기간 유형 [] 가. 1989년 7월 25일 이후 국립 사범대학 졸업자로서, 1990년 9월 1일부터 교원으로 임용된 날까지의 기간 [] 나. 1989년 7월 24일 이전 국립 사범대학 졸업자로서, 교사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시점의 다음 학기 시작일부터 교원으로 임용된 날까지의 기간 ※ '국립 사범대학'이란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 공업교육대학 및 국립대학에 설치된 교육과를 말함(법 제2조제1호)			
	국립 사범대학 졸업일	년 월 일			
교원으로 임용된 날	년 월 일				
신청인 (임용제외 교원 본인이 아닌 경우)	성명(한자)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임용제외교원 과의 관계	의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공무원인사기록카드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자료(유족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그 밖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에 따른 임용제외교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신원 대조·확인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임용제외교원 결정 통지서

접수일		접수번호		결정 제 호	
신청인	성명(한자)	()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결정내용	대상 적격	[] 법 제2조제2호의 '임용제외교원'에 해당함 [] 법 제2조제2호의 '임용제외교원'에 해당하지 아니함 (미해당 사유 :)			
	임용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각목중 ()목에 따름)			

1. 임용제외교원 결정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결정통지서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의 임용제외교원 결정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신청인이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제외교원 결정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임용제외교원의피해회복심의위원회

청인

임용제외교원 결정 재심의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일		접수번호		처리기간 30일	
임용제외교원	성명(한자)	()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인 (임용제외교원 본인이 아닌 경우)	성명(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임용제외교원 과의 관계		
신청 사유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 ○ ○ 임용제외교원의피해회복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재심의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재직기간 산입 신청서

접수일		접수번호		
임용제외교원	성명(한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재직기간 산입신청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 임용제외교원의피해회복심의위원회의 임용제외교원 결정 통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재직기간 산입 취소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일		접수번호		
임용제외교원	성명(한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재직기간 산입 내역	산입된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산입을 통보받은 날	년 월 일		
신청내용	[] 위와 같이 산입된 재직기간에 대해 산입을 취소하고자 함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연 락 처	(044) 203-6493, 6505